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349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2.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청 구 취 지

1. 피고 [redacted]광역시장이 2019. 4. 11. 원고에게 한 2013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1,803,240원 및 2014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811,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7. 12. 8. 원고에게 한 2012년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9,698,1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체납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9. 2. 12.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24. 폐업하였는데, 2012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698,180원, 2013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1,803,240원 및 2014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811,67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고 한다)은 B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2012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17. 12. 8. 원고에게 체납세액 11,036,450원(본세 9,698,180원 및 가산세 1,338,270원)의 납부통지를 하고(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되자 2017. 12. 14.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17. 12. 15.부터 2017. 12. 29.까지 14일간 공시송달 공고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다.

다. 피고 [redacted]광역시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피고 [redacted]광역시장도 B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19. 4. 11. 원고에게 체납세액 52,185,860원(2013년도분 본세 41,803,240원 및 가산세 4,013,060원, 2014년도분 본세 5,811,670원 및 가산세 557,89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제1 부과처분 및 제2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9. 10.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0.경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을,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주장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제1 부과처분이 송달간주된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9. 6. 3. 에야 이의신청을 한 다음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은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결국 제1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91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 부과처분과 달리 임의적 전치절차로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1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20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취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하고,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제1항, 제3항).

한편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제1 부과처분 납부통지서가 송달불능 되자 피고 [redacted] 구청장이 2017. 12. 15.부터 2017. 12. 29.까지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경 2012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체납세액에 관한 징수권을 이관 받은 피고 [redacted]광역시장에게서 체납세액의 납부 독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부과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2019. 3.경 비로소 제1 부과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소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따라서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촌인 C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C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한 B의 1인 주주이다. 원고는 B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을 뿐 자신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표시는 생략한다) 제47조 제2호 가목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표시는 생략한다) 제47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에서 B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회신받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B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2. 8. 10.부터 2015. 12. 24.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가목 및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B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C이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이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원고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등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C이 3촌 관계인 점, C이 주금을 납입한 거래내역 등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2013. 7.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C이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이 당시 B의 대표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은 아닌 점, ② 원고가 B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기간에 사내이사로 취임해있었고, 실제로 B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로서는 회사 운영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가목 및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 비속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6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